“We will always be with you for the best business”

www.ptviet.com

www.facebook.com/ptvcoltd

FTA - 원산지

원산지 증명 (C/O – Certificate of Origin)

- 국정세율 (National or General Tariff) > 협정세율(Conventional Tariff) 적용
- 수입통관 전 C/O 원본준비. (최초 6자리의 HS CODE 동일)
- 완전생산기준, 역내가공원칙, 충분가공원칙, 직접운송원칙

원산지증명의 종류

VCCI (베트남 상공회의소)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원산지

- FORM A : 미국, 일본 ,EU 등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수용, 미인정 국가 있음
- FORM B : 가장 기본적인 원산지 증명서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인정
- FORM TEXTILE : Garment ONLY
- FORM O : Coffee ONLY

MOIT (베트남 공상부)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원산지

- FORM D : Under Asean Countries
- FORM E : Under Asean & China Free Trade Agreement
- FORM AK : Under Asean & Korea Free Trade Agreement
- FORM AJ : Under Asean & Japan Free Trade Agreement
- FORM VK : Under Vietnam & Korea Free Trade Agreeme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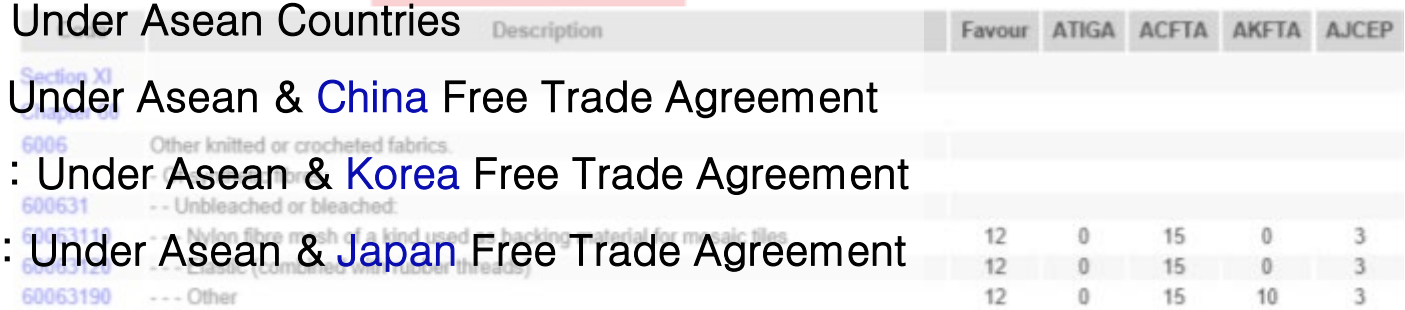

원산지 발급절차

1. 원산지 발급시 필요한 서류
   - C/O Form
   - Invoice
   - Export Customs Sheet (수출면장)
   - BL
   - Import Customs Sheet or VAT Invoice of Materials

2. 원산지 발급 절차
   1) BL 발급 (출항 후)
   2) 시스템에 Upload (MOIT – ECOSYS, VCCI – COVCCI)
   3) 서류제출 (MOIT or VCCI)
   4) 1~2일 후 C/O 발급

3. 원산지증명 발급 규칙
   - WO: 완전생산기준 (Wholly Obtained, 농수산물 등)
   - RVC: 역내부가가치기준 (Regional Value Contents)
   - CTC: 세번변경기준 (Change In Tariff , CC, CTH, CTSH)

현업에서의 이슈

- 원산지 발급전 내용 확인 (기입내용, 화물정보, HS CODE 등)

  **확인: Issued Retroactively (출항 3일 이후), Third Party Invoicing (삼국간거래) 등

- 원산지 발급 Lead Time. 특히, 베트남은 BL이슈 후 발급 가능함으로 시간이 촉박
- 화물의 예상 HS CODE 및 관세율 사전에 확인 후 원산지 발급 고려

  – 기본 “0”세율로 필요 없는 경우

  – 원산지 혜택 외, 다른 옵션으로 수입하는 경우

- 원산지는 화물이 Direct로 수출–수입 시 효과가 있다 (예외 – Back to Back)
- 원산지 원본 도착 전 수입통관 진행 (Official Letter 작성, 관세 납부 후 환급)

베트남 HS CODE 및 관세율 확인

- Ministry of Finance 에서 발급한 시행령 164/2013/TT-BTC의 HS CODE 및 관세율 확인
-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각종 HS CODE관련 서적 및 지방 세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나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자료로 오류 가능성 있음.

(참고용 세관사이트 http://www.customs.gov.vn/SitePages/Tariff-Search.aspx?language=en-US)

한-베 FTA 양허표

HS code (HS2012)	품목명	기준 세율(%)	양허 유형
0102292000	육우(肉牛)	40	B-1
0102392000	육우(肉牛)	40	B-1
0102909020	육우(肉牛)	40	B-1
0106202000	자라	8	Y-5

Y-1 : 협정 발효일에 완전 철폐

외 Y-(A) : A년 후 철폐 (3 ~ 15년)

S-1 : 단계별 양허유형 "S-1"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16년 1월 1일 이전에는 기준세율이 유지되며, 2016년 1월 1일까지 0 ~ 5 %로 인하

S-2 : "S-2"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는 기준세율이 유지되며, 2021년 1월 1일까지 0 ~ 5% 인하

S-3 : "S-3"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17년 1월 1일 이전에는 기준세율이 유지되며, 2017년 1월 1일까지 20%로 인하되며 2021년 1월 1일 이전에는 인하된 세율이 유지되며, 2021년 1월 1일까지 0 ~ 5%로 인하

이상 E, S, R 등 하기 협정문 "2장 부속서 2-가" 참고 하십시오.

FTA 협정문 (http://www.fta.go.kr/main/situation/kfta/lov3/vn/2/)